

「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09월 03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0년 0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5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0년 09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최찬섭 행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제도화

나. 주요내용

- 이 조례는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(제1조)
-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절차·관리·정산 등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.(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을 근거하여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규정하고자 제정의 취지가 있으며, 대행기관인 “민주평통 평창군협의회”는 2019년 제19기를 출범, 36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·활동하고 있습니다.
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안 제3조에서는 민주평통 대행기관장인 군수의 사무처리 사항
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
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 협조
안 제7조에서는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
대한 포상규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,

-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-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

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이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”이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(이하 “통일자문회의”라 한다)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평창군을 말한다.

제3조(운영·사무 처리) ① 대행기관장인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
2. 통일자문회의 평창군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
3.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4.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

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.

제4조(사무지원 및 준용 등)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,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조(인력 등 지원)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공공시설 이용)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,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한다.

제7조(포상)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「평창군포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